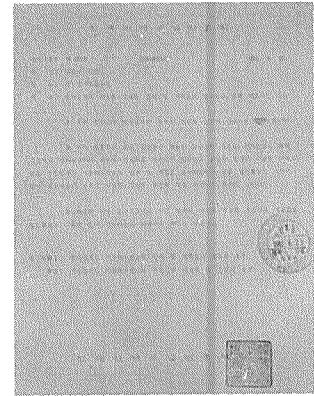


대정부 건의 ②

가전산업 유통경쟁력 확보대책 방안 건의



'91. 6. 24 경제기획원, 상공부,
재무부, 국세청 건의

<유통산업개방 배경>

1. 도·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현황

- 상공부소관 도·소매업(무역업제외) 중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은 연쇄화 사업 1개 업종
-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단일점포로서 매장면적 700m 이상인 경우와 2개 이상의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엔 재무부장관이 상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상으로는 개방(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제15조)
— 다만, 상공부에서 내부방침으로 매장면적 700m (212평) 미만의 단일점포에 한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오고 있다.

2. 개방추진경위

- 가. '88. 10월 기수립된 도·소매업 진흥5개년 계획의 단계적 개방계획의 일환
- 나. 한·미 수퍼301조 협상

구 분	기준년도	개 방 내 용
제1단계	'89	-기술도입 및 도매업 투자폭의 확대 -외국지사 규제 완화
제2단계	'91	-소매업의 선별개방 (점포수, 면적제한 완화)
제3단계	'93	-제한범위의 대폭축소 -자유화의 전단계

-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제15조 (구규정 : 외국인 투자인가 지침 제6조)에 의한 제한 이외에 투자비율 제한 등의 이행조건은 부과하지 않는다.
— 단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이행 조건 부과 가능
- '91. 1. 1 이후에도 도·소매업에 대하여는 심사인가제 유지

3. 개방계획

가. 업종구분

- 소매업 : 백화점, 슈퍼마켓, 일반소매점 등
- 연쇄화사업 : 한국표준산업 분류 개정시 도매업의 하나로 분류
— “11개 이상의 점포를 통일적으로 경영하여

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. 위점포에는 가맹점과 직영점이 모두 포함된다."

나. 개방계획의 내용

시행 시기	내 용
'91. 7	○ 소매업(외국인투자허용 소매 36개 업종) - 점포당 폐장면적 1000m ² 미만의 경우 허용 - 점포수 10개이하의 체인스토어 허용

4. 가전산업 유통구조현황

- 국내가전유통은 전문대리점 조직을 통한 판매가 주류이며 백화점, 연금매장 등 대형소매점과 농협을 통한 특판 비중은 미흡함.
- 대리점은 제조회사와 판매계약하에 해당 제조회사의 전제품을 취급하며, 제조회사로 부터 여신, 판촉, A/S, 경영지도 등을 지원받음.
(A/V기기, 주방기기 등 특정제품만 취급하는 전문점도 있음)

〈가전유통구조〉

유 동 행 태 (%)				대리점수(개)
대리점	백화점	기 타	계	
87.1	4.4	8.5	100	780

* 국내가전 3사 대리점 현황('90)

- 대리점수 : 3,950점, 평균면적 : 17평, 평균 종업원수 : 4명
- 월매출액 : 5,000만원 미만 대리점이 전체 57%점유
○ 전매시장은 주요 4 대도시 6개시장에 가전관련 682개 점포가 있음.
- 대리점의 재고 감축과 금융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유출되는 제품이 대부분임.
- 할인가격으로 인한 정상가격 구조 문란 등의 문제가 있어 가전3사 공히 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가전유통 구조상 불가피한 실정임.
(거래규모 연간 4,000억원선 (추정))

5. 유통시장 확대개방에 따른 민간자율 공동대응 방안

- 가. 가전산업 협의회내에 소위원회 구성, 운영 ('91. 5. 30)
- 위원회명 : 유통시장 개방관련 가전업계 대책위원회
- 구성 : 금성, 삼성, 대우 등 11개업체 (협의회 회원사)
- 기능 : 가전유통개선 방안강구 및 제도지원 대정부건의, 대국민 홍보, 유통관련 정보수집, 전파 등
나. 유통시장 개방과 가전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Workshop개최
- 일시 및 장소 : '91. 6. 14 올림픽 유스호스텔
- 주관 : EIAK(가전산업협의회)
- 내용 : 전문가의 주제 및 토론
다. 대국민 의식개도 및 홍보활동의 강화
- 국민경제상 가전산업의 중요성 홍보
- 국민적 지원 필요성 홍보
-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
- 소비자 보호원 및 소비자 단체의 적극 협력 요청
- 적극적인 국산품 애용 캠페인

〈가전산업 유통경쟁력 확보 대책방안 관련 건의〉

1. 건의배경

- 금번 정부에서 유통산업 2단계 개방조치에 의거, 금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의 허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, 외국유명 가전제품 제조회사와 대규모 양판점이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어,
○ 이에 우리 가전업계에서는 민간자율의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나, 각종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검토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키로 함.

2. 가전산업 유통구조 현황

- 국내 가전제품 유통은 백화점, 연금매장, 대

형전문상가 및 전문대리점 조직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해당업체와 판매계약하에 전제품을 취급하고 여신, 판촉, A/S, 경영지도 등을 지원받음.
(A/V기기, 주방기기 등 특정제품만 취급하는 전문점도 있음.)

〈가전유통구조〉

유동형태 (%)				대리점수(개)
대리점	백화점	기타	계	
87.1	4.4	8.5	100	780

〈국내 가전3사 대리점 현황〉 (90)

전국대리점수	평균면적	평균종업원수	월 매출액	비고
3,950	17평 대형24-30	4명	50백만원미만 대리점 이 전체 57%점유	

3. 유통개방이 가전업계에 미치는 영향

- 가. 국내 가전 대리점의 도산우려
 ○ 외국 유명업체의 대형직영 판매장 및 유통전문업체의 양판매장에 비해 기존 국내 대리점 매장규모, 자금력, 전문화된 판매기법 등 모든분야에서 취약

〈유통 경쟁력 비교〉

구 분	매장면적	종업원 수	월매출 규모
외국유통 양판점	300평	30명	5억원 이상
기존 국내대리점	200평 내외	5명	1억원 이내

- 나. 시장가격 질서 문란 우려
 ○ 국내진출 외국 양판점의 외국산제품과 국내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혼매체제에서 막강한 판매력과 자본력을 배경으로 국내가전사에 공급가격 인하 압력이 예상됨.

- 다. 국내 가전업체의 경영악화
 ○ 국내 가전사의 기존 유통망(전문대리점)의 도산은 바로 국내 내수기반 붕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가전업체의 손익 악화로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됨.

- 라. 과소비 풍조 만연
 ○ 외국업체 유통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고가, 대형상품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업체의 유통시장 직접 참여가 과소비 풍조를 고조시킬

수 있음.

— 수입개방 이후 대반의 고가상품 비중 변화

- CTV 25 "이상 판매비중 변화(대만업체 시장점유율)"

'86년 28% → '90년 58%

'86년 82% → '90년 23%

- 냉장고 300L이상 판매비중 변화(대만업체 시장점유율)

'86년 31% → '90년 44%

'86년 60% → '90년 29%

4. 가전업계의 유통시장 개방 대응방안

가. 기존 대리점 유통육성을 위한 노력

- 가전제조업체는 국내 대리점 유통력(점포장치비 지원, 점포평수 확대)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

- 대리점 유통자본 영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장기성장 장려기금을 운영, 유통자 본축적을 유도

나. 유통의 전문화 추진

- 선진 외국유통의 진출에 대비한 소득계층별, 수요계층별로 유통경로 전문화 재편 추진을 적극 검토

● 일반점 : 기존일반 가전대리점

● A / V 점 : 고급 HiFi제품 및 대형 CTV, VTR 등 전문 대리점

● 대형가전점 : 대형냉장고, 세탁기, 에어콘 등 전문대리점

다. 대리점 경영지원을 위한 물류 체계개선

- 가전회사별 전국대리점 On-Line 전산망 (POS) 구축 추진

- 물류 및 배송체계의 선진화

● 당일 배송체계 달성을 및 직배제도 도입 추진
 라. 고객서비스 개선

- 서비스 Net Work 구축

- 서비스 인력양성

- 신속서비스를 위한 기동장비 보강

5. 가전산업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법규 조정 건의사항

가. 기업의 출자 및 가전업체의 유통참여시 기업결합 인가 허용요망

관련법규 (공정 거래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7조(기업결합금지) :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항1호 : 다른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소유금지 1항5호 : 새로운회사 설립의 참여금지 제10조(출자총액제한) :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항 : 순자산액의 40%초과금지 제12조(기업결합신고) : 7조1항에 해당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항, 1호, 5호 : 출자비율 20%이상인 경우 신고의무
예의 사항 인정 필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현재 가전3사는 모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모두 제한된 상태 -대리점은 법인화하여 지원할 수 없는 입장 -일본 양판점 대응을 위해 최소 5-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함. 대리점의 조달능력은 2-3억원에 불과
요망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7조1항단서조항 :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예외(7조2항신고) 제10조1항 단서조항1호 :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합리화 계획에 따른 경우 4년간 40%초과인정 제12조1항 단서조항 : 제7조2항 신고시 면제

나. 유통업 참여를 제한하는 예외관리 규정 의 개선요망

관련 법규 (여신 관리 시행 규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1조(기업투자) : 30대그룹 소속기업의 기업투자는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 필요 제12조(기업투자금지) : 주거래은행 승인금지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항4호 : 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달업체의 소속 기업군 이외 투자 제14조(부동산취득금지) : 주거래은행 부동산 취득 승인금지 1항4호 : 차입자금에 의한 부동산 취득
예의 사항 인정 필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현재 가전3사 모두 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달상태 -가전 및 반도체, 컴퓨터, 정보통신 사업의 경우 계속적인 설비투자와 개발투자가 소요되어 당분간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달성할 수 없는 입장 -또한 배당압박 및 현 증시상황 등으로 자본금 증자도 거의 어려운 상태임. -지역별 물류센타의 자동화, 전산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현재 임대창고에 투자할 수 없는 입장
요망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2조2항 단서조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호 : 재무부장관이 산업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투자로 1항4호(자기자본미달) 해당경우 7호 :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정부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투자로 1항1호(비주력업종 투자) 해당경우 제14조2항 단서조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호 :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영업활동 필수 부동산으로 주거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

다. 가전업체의 대리점 지원비용 인정검토 요망

O 국내 가전대리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대리점 전산화 및 하역장비 지원과 점포임대차 보증금 지원으로 점포확장이 필요하며 진열 및 장치비용 지원 등이 필요함.

관련 법규 (법인 세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제20호(부당행위 계산부인) : 특수관계인 거래비용 인정부인 시행령 46조1항(특수관계인 규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항6호 :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 판매하는자 시행령 46조2항(조세부담 부당감소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항7호 : 출자자 등에게 금전 또는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때
예의 사항 인정 필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영세대리점의 자생력확보를 위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리점 전산화 및 하역장비 지원 •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(점포확장 등) • 진열 및 장치비용 지원 등이 필요함 -또한 제조생산에 관련된 하청회사와 같은 차원의 설비 지원, 자금지원 등이 필요
요망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행령46조1항6호 : 제조법인의 특약대리점을 특수 관계인으로 규정함을 삭제요망 • 상기조항 삭제가 곤란한 경우 통칙으로 예외사항 인정 조항 신설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) 협행통칙 2-14-5-20(특약판매자 범위) 예외사항 : 제조회사의 하청공장은 특약판매자 범위에서 제외

라. 유통근대화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의 지원확대 요망

관련 법규 (조세 감면 규제 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71조(특정설비 투자세 공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항5호 : 유통근대화 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투자 시행령57조1항7호 : 유통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시설투자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
요망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행 유통근대화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 공제지원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연쇄화 사업자 -시장도매센타 -대규모 소매점에 한함 • 제조업체의 자체 물류자동화 시설투자와 대리점 전산화 및 POS체계 등 유통정보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확대요망

현 행	건 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쇄화 사업자 • 시장, 도매센타 • 대규모 소매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통사업자 및 유통관련 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제조업체